

<제9차>

이사회 회의록

< 2010. 12. 27(월) >

한국장학재단

제9차 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개요

- ① 회의일시 : 2010년 12월 27일(월) 11:00 ~ 13:30
- ② 회의장소 : 밀레니엄 힐튼 시즌즈(Season's)
- ③ 출석이사 : 8명
 - 이사장 이경숙
 - 이 사 김춘선, 김은섭, 이기봉, 김명환, 문태현, 정해룡, 천세영
 - ※ 감 사 홍동현
- ④ 불참이사 : 4명
 - 이 사 소기홍, 정은보, 이현봉, 홍규덕
- ⑤ 상정안건
 - 보고안건(1건)
 - 제9-1호 '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' 개정 경과 보고
 - 의결안건(10건)
 - 제9-1호 정관 개정(안)
 - 제9-2호 직제규정 개정(안)
 - 제9-3호 회계규정 개정(안)
 - 제9-4호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(안)
 - 제9-5호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 - 제9-6호 내규관리규정 개정(안)
 - 제9-7호 2011년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 계획(안)
 - 제9-8호 임원보수(안)
 - 제9-9호 보수규정 개정(안)
 - 제9-10호 연봉제규정 제정(안)
- ⑥ 소관부서 : 경영기획실, 인력개발부, 재무관리부

2. 논의 결과(요지)

□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

이사장이 한국장학재단 제9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.
간사로부터 성원보고를 받음.

□ 전차회의결과 보고

간사로부터 전차회의결과를 보고 받은 후,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결과를
원안 접수함.

□ 비상임이사 워크숍 참석 결과 보고(문태현 이사)

- 일 시 : '10.11.17
- 장 소 : 코트라 국제회의실
- 주 최 :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
- 대 상 : 공기업·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177명
- 목 적 :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 및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
위한 우수사례 공유·확산
- 주요내용
 - 공공기관 선진화와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만 경영 사례
소개 및 해소 방법에 대해 발표
 -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상임이사의 권한 및 책임을
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무수행 매뉴얼을 개발 중이며, 완료 후 배포 예정
 - 8개 공공기관 이사회 우수사례
 - 1) 이사회 개최시기 정례화 및 참석률 제고를 위한 노력(월평균 1회
이사회 개최, 비상임이사 참석률 90%이상)
 - 2) 이사회에서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는지 측정 지표가 부결, 수정결의
빈도 등인데, 대체적으로 수정과 부결 안건이 평균 20% 이상임
 - 3)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정례적인 회의진행을 하고 있음. 선임 비상임이사를
중심으로 비상임이사 회의를 개최해 안건제시 및 토의를 통해 의견을
전달함

- 4) 마사회의 경우 5~7일전 사전 심의를 진행하여 집행부가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안건을 내고,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게 함. 또한 사업계획서, 예산서 등의 경우 3~4일 전에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게 하는 집중 심의제도도 도입하고 있었음
- 5) 비상임 이사로 구성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음.

□ 보고안건 제9-1호 : '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' 개정 경과 보고

① 안건 주요내용

· 개정사유

-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국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향후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, 그 동안 학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법률을 개정

· 주요 개정 사항

- 보증, 장학금지원계정 설치 : 재단 내 기존 기금업무 이관을 위해 보증, 장학금지원계정을 설치
- 기금폐지에 따른 보증주체 승계 :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시 정부(기금)에서 보증한 부분에 대하여 보증주체를 재단으로 변경
- 기금 관련 조항 삭제 : 국가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
- 대출계정의 조성방법으로 CP 발행을 가능하도록 함
- 지원에 의한 입영의 경우에도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
- 미성년자특례규정의 확대적용 : 농촌학자금지원사업과 같은 위탁사업의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
- 자료제출요청 관련 규정의 개정 : 농촌학자금지원사업과 같은 위탁사업의 경우에도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접수하기로 함

□ 의결안건 제9-1호 : 정관 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· 개정 이유

- 재단법 개정안이 국회통과('10.12.8)되어 국가장학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정관상 기금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· 주요 개정 내용

- 제1조 : 기금의 폐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기금관련 사항 수정
- 제19조제1항 : 기금의 폐지에 따른 수정 및 사업내용의 수정
- 제22조 : 기금의 폐지에 따라 기금관련 사항 수정
- 제24조 : 기금의 폐지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승계한 보증계정과 장학금계정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함
- 제6장 국가장학기금의 삭제
- 기타 조문 수정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9-2호 : 직제규정 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· 개정 이유

- 재단법 개정안이 국회통과(10.12.8)되어 국가장학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직제규정상 기금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

· 주요 개정 내용

- 제7조 : 기금의 폐지에 따라 부서 업무 중 기금관련 사항 삭제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9-3호 : 회계규정 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· 개정 이유

- 재단법 개정안이 국회통과(10.12.8)되어 국가장학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회계규정상 기금관련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

· 주요 개정 내용

- 제1조 : 기금의 폐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기금관련 사항 수정
- 제3조 : 준정부기관 지정에 따른 회계원칙 변경
- 제5조 : 기금의 폐지에 따라 기금관련 사항 수정
- 제6조 : 기금의 폐지에 따라 기금관련 사항 수정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9-4호 :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· 배경 및 목적

- '09년 정부출연금 중 예비비로 출연된 1,000억원의 반납 등을 위해 재단 회계의 수입·지출 예산에 대해 추가경정을 하고자 함
-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한 삼성장학기부금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함

· 주요 내용

- 예비비 1,000억원 반납 등을 위한 재단 회계 추가경정
 - 목적: '09년 정부출연금 중 예비비로 출연된 1,000억원의 반납 등을 위해 재단회계의 수입·지출 예산에 대해 추가경정을 하고자 함
 - 추가경정 내용
 - 수입과목 신설 : 전기이월액(관) 187,042백만원 (순증)
 - 지출과목 신설 : 반환금(목) 103,956백만원 (순증)
 - 지출과목 신설 : 차기이월(관) 87,042백만원 (순증)
 - 지출예산 변경 : 손실보전준비비(목) 11,275 → 7,319백만원 (△3,956)
- 삼성장학기부금 특별회계 신설
 - 목적: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한 삼성장학기부금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함
 - ※ 삼성장학기부금운영위원회에서 의결('10. 12. 14)
 - 향후추진계획: 매각 등의 운용방안, 기부금의 수혜대상 및 연간 지원금액 등에 관한 기부금 활용계획을 '11년 1월 31일까지 수립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삼성꿈장학재단(구 삼성고른장학재단)과 동일시되는 오해를 막기 위해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9-5호 :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· 배경 및 목적

- 재단법 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, 정관 제7조(이사회) 제2항, 정관 제25조(예산편성)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2011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(안)을 의결하고자 함

· 2011년 사업계획(안) 주요 내용

- 핵심경영가치

- 재단 슬로건인 “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”와 기관장 철학인 “봉사와 섬김의 리더십” 가치를 함축하여 “4C Servant”를 핵심 경영가치로 설정

- 전략목표 I 최적의 학자금 금융지원 서비스 제공

- 고객중심의 학자금 대출 지원 서비스 :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을 비롯하여 일반상환학자금, 농촌출산대학생학자금융자, 이자지원, 현역사병 이자납부 유예, 대졸미취업자 원리금 상환유예 운영
- 학자금 대출 관리 : 학자금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유의자 증가 방지와 신용회복지원, 연체금액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활동, 대위변제 최소화 추진
- 재원조달 및 리스크관리 : 학자금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저리로 조달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

- 전략목표 II 특화된 장학지원 체계구축 및 통합화 추진
 -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, 이공계 및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생, 기부금 장학 사업
- 전략목표 III 인재 성장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
 - 멘토링 사업 : 대기업 CEO와 석학, 사회 각 분야 리더 등 다양한 성공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사회지도층 멘토의 지혜를 대학생 멘티에게 전달하여 리더십과 섬김 정신을 함양한 미래인재 Pool을 구축
 - 대학생 지식봉사사업 :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의 초·중고 학생 학습지도를 위한 지식봉사 중심의 대학생 사회 참여를 지원
 - 기부금 조성사업 : 신규 인재육성지원 사업 발굴 및 수행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 기업, 기관 및 개인 등 채널별 잠재 기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기부금 조성 확대
- 전략목표 IV 고객가치 중심의 융합형 사업추진 인프라 구축
- 전략목표 V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인프라 조성
- 2011년 예산(안) 주요 내용
 - 2011년도 수입·지출 예산총액: 5,693,572,089,000원
 - 일반회계와 인재육성특별회계, 기부금특별회계, 삼성장학기부금 특별회계, 수익특별회계의 규모를 반영하여 통합운영하되, “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”에 의하여 구분계리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앞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은 이사들이 미리 검토하는 것을 고려요망
- 국가근로장학금, 국가연구장학제도 등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장학금의 경우 재단의 의지와 별개로 정부 및 국회의 의지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거나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었음. 앞으로 정책 기획 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실행 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재단이 협력하기 바람
- 학자금 대출, 장학금 지원 업무와 인재육성지원 사업의 균형을 잘 잡아 업무 수행을 할 것

- 학생이 대학을 다닐 때 국가에서 주는 대출이나 장학금이 중복되지 않고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개인의 니즈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도록 근본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9-6호 : 내규관리규정 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· 배경 및 목적

- 기획재정부 「공공기관 성과연봉 권고(안)」에 따라 간부직을 성과연봉제 대상으로 보아 성과연봉제를 신설하면서 이사회결로서 제정·개폐하는 규정에 성과연봉제 규정을 추가

· 주요 내용

- 제8조(제정권자) : 성과연봉제규정을 보수규정과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보수규정과 같이 이사회 의결 대상 규정으로 지정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9-7호 : 2011년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 계획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· 배경 및 목적

- 2011년도 1학기 및 2학기에 실행예정인 든든학자금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원 조달

· 주요 내용

- 2011년 동안 채권발행을 위주로, 대출금리 인하 및 단기 유동성관리를 위해 CP 및 단기차입을 포함해 3조 9천억원 이내 발행 예정
- 조달금리 예상: 중장기 만기채권의 비중이 높은 재단채 평균 발행 금리는 '10년 2학기 평균조달금리 4.535% 대비 30~80bp 가량 상승 예상 (4.8%~5.3% 범위)
단, 든든학자금의 일부(10년, 15년만기)를 변동금리로 조달할 경우 4.2%~4.8% 예상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9-8호 : 임원보수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· 배경 및 목적

- 정관 제16조에 제1항에 따라 「임원보수」를 의결코자 함

· 주요 내용

- '10년도 기본연봉

- 기관장 : '09년 정무직 공무원(차관) 연봉과 동일하게 편성
- 이사/감사 : 기관장 기본연봉의 80% 수준
- '10년도 임원보수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'09년도와 동일보수

- '11년도 임원 보수(안)

◦ 기본연봉

- 이사장: '10년 차관급 연봉 × 1.055*

- 감사/상임이사: ('10년 차관급 연봉 × 1.055*) × 80%

* 2011년도 급여 인상률 5.5% 적용

◦ 성과연봉 지급기준 : 당해 연도 경영평가 성과급은 전년도 기본연봉의 60%를 상한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임원 성과연봉은 기획재정부에서 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6월달에 지급하는 것을 확인함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9-9호 : 보수규정 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· 배경 및 목적

- 통상임금 산정지침 일부 개정 및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209시간보다 작게 산정하였기 때문에 지침 위반에 따른 변경 필요

· 주요 내용

- 제2조(용어의 정의) : 현재 183시간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
- 제24조(성과연봉) : 성과평가 지급기준 등을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」 따라 적용하고 성과연봉 평가등급별 인원분포 차등폭 확대를 통한 성과중심 인사체계 구축(기재부 지침 반영)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본 사안은 교과부에서 감사하고 정책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이며, 통상 임금 산정 시간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임
-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진행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본 사안 원안대로 협약체결 또는 노동조합규약에 저촉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의결하는 것이 필요함

③ 논의 결론

- 조건부 원안 의결

□ 의결안건 제9-10호 : 성과연봉제규정 제정(안)

① 안건 주요내용

- 배경 및 목적
 - 기획재정부 「공공기관 성과연봉 권고(안)에 따라 간부직을 성과연봉제 대상으로 보아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규정 외 성과연봉제 규정 제정
- 주요 내용
 - 적용대상 : 2급 이상 직원(부서장 보임여부 불문), 3급 직원 중 부서장에 보임된 자
 - 선택적 복지비, 자가운전비, 자녀보육비 등 각종 수당은 지급에서 제외 (성과연봉으로 포함)
 - 보수 : 기본연봉, 성과연봉 및 법정수당
 - 직무급 지급대상 : 부서장 10백만원, 팀장 5백만원
 - 성과연봉 : 개인별 평가등급은 S, A, B, C, D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결정되며, 해당 등급에 따라 등급별 기준지급률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
 - 기타 : 승격한 경우에는 기본급에 별도 정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음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없음

③ 논의 결론

- 원안 의결

- 폐회선언. 끝.